#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651

발의연월일: 2021. 12. 1.

발 의 자:김경만·김홍걸・홍성국

송옥주 • 윤건영 • 김진표

임오경 · 강선우 · 박홍근

김정호 · 신정훈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기업일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과세 적용한도가 3천만원에 불과해 유인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음.

이에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한 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 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의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인력난해소와 혁신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한정한다)"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 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 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 --2025년 12월 31일----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 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 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 -----주식매수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 및 「자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한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로 한정한다)-----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3천만원</u> 이내의 금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	5천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